

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안내



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.
적절한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
01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

'19.10.29.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으로
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것,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

처리 방법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(사업장 일반폐기물)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
- (배출) 개별 밀폐포장하고, 전용봉투(고시)에 배출
- (보관) 보관일은 15일(냉장보관시 30일) 이내, 별도 보관장소,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
- (운반) 냉장차량으로 운반(기저귀만 별도로 운반)
- (처리) 일반소각장에서 처리

시행일 및 경과조치 '19.10.29.로 시행하되, 인허가, 계약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, 경과조치 기간(~'19.12.31.)을 부여
-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"의료폐기물"로 처리 허용
- 위탁처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"의료폐기물"로 처리 허용

| 문의처 |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044-201-7361, 7377)

02 의료폐기물 줄이기(분리배출) 방안

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아닙니다.

의사, 간호사, 약사 등

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자제를 위해 **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숙지하여 분리배출을 실천한다.**
-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**분리배출하기** - 입원실, 처치실 등에서 발행하는 약솜 등 의료폐기물 수거하기
- 환자, 내원객 등에게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하기

의료폐기물	일반폐기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혈액·체액·분비물 등에 오염된 수술용 칼날, 주사바늘, 봉합바늘 등 소모품 혈액·체액·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, 탈지면 백신·항암제·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된 링거병(수액팩, 앰플병, 바이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기기 및약품 포장재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사용한 기저귀 혈액·체액·분비물 등에 접촉 및 오염되지 않은 석고봉대, 의료기기 등 백신·항암제·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, 영양제 등이 담긴 링거병(수액팩, 앰플병, 바이알 등)

입원 및 외래환자, 내원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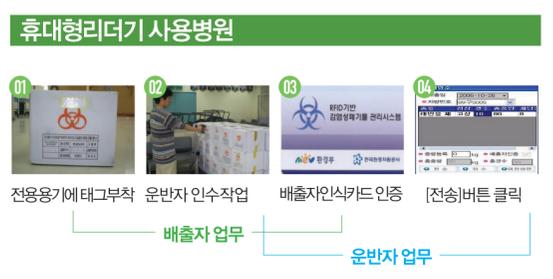
의료폐기물과 혼합 또는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.
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혈액·체액·분비물 등에 오염된 거즈, 약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료수병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버리기
--	---

03 RFID기반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

- 01. 운영기관 및 시스템명**
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(www.allbaro.or.kr)
- 02. 법률적 근거**
① 폐기물관리법 제45조2항(폐기물의 인계·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)
②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
- 03. 사용자**
의료폐기물을 배출·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
- 04. 관리·감독**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장
- 05. 배출자유의사항**
①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반드시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. (용기 1개당 1개)
② 운반자에게 인계 시 반드시 병원 담당자가 직접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여야 합니다.
운반자가 배출자 인식카드(또는 시리얼번호) 소지 금지
③ 폐기물 인계·인수 당일 인계·인수 전송내역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

06. 배출자의 RFID기반 전자인계서 사용방법



폐기물 출고 방법



| 문의처 | 한국환경공단 RFID운영부 (032-590-4263, 4265, 4268)